외국의 언론관계 판례

미국판례

서평에 대한 제소는 그 대상이 된 책과 관련하여 납득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MOLDEA v. NEW YORK TIMES CO.
22Me0. L. Rptr. 1673(미연 방 D.C. 항소법원, 1994)

사건개요

1. New York Times(이하 「타임스지)라 한다)의 스포츠 기고가인 Gerald Eskenazi 는 1989. 9. 3.자 타임스지 서평란에 이 사건의 원고 Dan 2. Holden 가 쓴 「간섭 조직범죄가 프로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라는 책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서평을 게재하였다. 그 서평은 Holden 의 책 「간섭」이 너무 많은 엉성한 저널리즘(too much sloppy journalism)에 의해 훼손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 작품의 단점의 본보기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

2. Holden 는 위 서평이 게재되기 이전에는 자신이 존경 받는 작가였으며, 위 책의 출판이 성공적으로 끝나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그 서평으로 인하여 그의 성공 가능성이 무산되었으며, 또한 강연 등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많은 수입 상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990. 8. 24. 타임스지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3. 타임스지는 쌍방이 증거개시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약식재판(summary judgment)을 신청하였고, 1992. 1. 31. 미 연방지방법원은 서평의 문면과 책자 「간섭」에 의하여 타임스지의 신청을 허가하였다(19 Med. L. Rprt. 1931). 제 1 심 은 Moldea 의 청구는 법률상 제소 가능할 수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① 문제된 타임스지 의 서평은 문학작품에 대한 의견의 진술이거나, 또는 ②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793 F. Supp. at 338).

4. Moldea 는 위 제 1 심의 약식평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연방 D. C. 항소법원의 합의부(panel)는 2 대 1 로 Modea 의 책에 대한 위 서평의 일부 평가는 입증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으로제소 가능한 것이며 법률상 진실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제 1 심을 파기하고, 제 1 심으로의 환송을 명하였다(22Me4. L. Rprt. 1321). 위 결정에서 위 법원은 소송의 아주 최초단계에서 그와 같은 약식재판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5. 피고 타임스지는 재심을 위한 청원(petition for rehearing)을 제출하였으며, 연방 D. C. 항소법원은 타임스지의 청원을 허가하고, 의견을 수정하여 제 1 심 법원의 약식평결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위 법원은 그 첫번째의 판시내용(환송을 명한 결정) 중 다수의 곁은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확한 것이기는 하나, 그 의견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언동이 서평의 분야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데,

서평은 독자들이 수개의 해석이 가능한 문학작품의 영적인 비판을 기대하는 특수 한문학 장르라고 판시하고 있다.
6. 제 1 심 이후 전 소송과정에 걸쳐 Moldea 는 타임스지에 게재된 서평 중 6 개의 특별한 언동부분이 그를 그 전공분야인 조사저널리즘(investigative journalism)분야에서 무능한 작가로 비방하고, 또한 위 책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위 비방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판결요지(다수의견)
1. 서평(book review)인 비판과 논평은 그러한 해석이 그 책에 의하여 납득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책의 방대한 512 페이지의 내용을 신뢰하기에는 책의 내용이 너무 엉성하다」는 내용의 서평은 제소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평가는 책에 의해 납득될 수 있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2. 원고의 책의 내용에 비추어 명예훼손소송의 청구원인으로 될 수 없는 언동은 프라이버시의 부당한 침해(false light Invasion of privacy)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결이유(요약)
1. 상황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Context)이 법원이 제 1 심을 파기하고, 제 1 심으로의 환송을 명한 처음의 판결(이하 「MOLDEA I)이라 한다)은 「현행 판례법상 이 사건의 문제된 내용이 뉴스기사가 아니고, 서평란에 게재된 사실은 이 사건의 분석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시는 서평이라고 해서 당연히 명예훼손에서 면제되지는 아니한 점을 밝힌 점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위 MOLDEA I 판결은 문제된 내용이 일반독자들이 그러한 판단이 게재되기를 원하는 분야에 언급된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근시안적인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서평자는 평가대상인 작품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rational Interpretations)을 할 수 있는 자유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Masson v. New Yorker Magazine, Inc., 1115. Ct. 2419). MOLDEA I 판결의 기본적인 구성은 타당할 것이며, 연방대법원의 Milkovich v. LorainJournal Co., 497 U. S. 1 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처럼 의견의 진술이라고 해서 당연히 명예훼손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의견의 진술도 허위의 사실을 함축한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하면 제소가능한 것이다. 위 Milkovich 판결의 사안은 오하이오주의 한 신문이 고등학교의 레슬링코치인 Milkovich 가 주법원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고 해서 위 Milkovlch 가 신문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이었는데, 연방대법원은 그 문제된 내용이 단순히 작성자의 의견의 형식으로 제공되었다고 해서 위증의 주장이 제소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MOLDEA I 판결에서 이 법원은 Milkovich 판결이 문제된 기사가 스포츠칼럼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해서 이 사건에서도 그 게재된 상황(Context)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Milkovich 판결이 그 상황의 중요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건의 배경에 비추어 이를 평가절하 하였다고 본다. 첫 번째, Milkovich 판결은 Greenbelt Cooperative Publishing Association v. Bresler, 398 U. S. 6, 판결 및 Letter Carriers v. Austin, 418U. S. 264 판결의 유효함을 재 확인했다. Bresler 판결에서는 한

부동산업자가 시의회와 도시구역지정문제를 놓고 협의하면서, 동시에 시는 위 업자로부터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협상하였는데, 한 지역신문은 위 부동산업자의 전술을 공갈(blackmail)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위 업자는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공갈이 형사상의 행위를 뜻한다는 부동산업자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in these circumstances) 공갈이 라는 단어는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Bresler, 398 U. S. at 13). Letter Carriers 사건에서 법원은 노동분쟁 중 배반자(traitor)라는 용어를 파업 비가담자(scab)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은 노동분규라는 사정에 비추어(in the context of labor dispute) 명예훼손을 제기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다. 위 두 사건은 각 사건의 문제된 발언이 과장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 어구라는 점에 근거하였는데, 오히려 위 사실은 전후 상황의 중요성(importance of context)을 강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과장어구를 명백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발언이 행해진 상황(settings)이고, 의도된 청중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Masson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명예훼손소송에서 상황의 고려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는 다른 증거가 된다. Masso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한 작가가 인터뷰에서 한 것으로 되어있는 인용을 변경하는 것이 공공의 인물의 명예훼손소송에서 필요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위 판결은 인용이 독자들에 의해 원 진술인의 현실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는 그 작품이 소위 사실드라마(docudrama)인가, 아니면 역사물인 적선인가, 아니면 기억에 의해 대화를 재구성하는가 하는 등의 전후 상황에 달려 있다고 판시 하였다(Masson, 111 S. Ct. at 2430~2431). 이 법원은 Oilman v. Evans, 750 F 20 970,983(상고허가신청 기각)에서 법원은 문학의 좌림된 장르가 평균적인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오랫동안 고려하여 왔음을 인식하였다. Milkovich 판결의 판시가 이러한 배경에 반하여 결정되었으며, 또한 이 분야에서 중요한 2 개의 선례적 판결을 지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 법원이 처음에 내린 MOLDEA I 애서 Milkovich 판결이 언동이 행하여진 주변상황을 고려 하는 원칙을 포기하였다고 추측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다. MOLDEA I 에서 이 법원이 본 대로, Milkovich 판결을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Miovich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그 의도를 밝히지 아니한 채 확립되어 있는 법을 폐기하려 하였다고 추측할 수는 없다.

Ⅱ. 서평이라는 형식의 관련성

Milkovich 판결의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내용이 독자들이 그 장르에서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형식에 해당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분야, 즉 서평과 관련되어있다. 타임스지의 문제된 기사는 오직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자의 평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판단은 독자들이 서평에 대하여가지는 기대와 이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그 서평이 「간섭」이라는 책이 마약 밀매꾼에 의하여 책 어겼다고 진술 또는 함축하는 경우는 위와 다를 것이다. 이 경우는 Milkovich 의 사안과 유사하며, 비평자가 비평의 형식을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비평자에게 문학작품 등에 관하여 평론할 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적, 법률적 전통이고, 이 사건의 문제된 내용은 Moldea 의 성격, 명성 또는

작가로서의 능력에 관한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라 책에 대한 평가이다. 그 동안의 평론의 업적에 비추어 보면, 비록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평론자는 그 장르에 적정할 정도의 헌법에서 보장된 숨결 자유(breathing space)가 부여되어야 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254,272.). 이 법원은 타임스지가 비평적인 평론을 평가할만한 적정한 기준을 제공하였다고 믿는다. 「적정한 분석을 한다면 평론은 그 해석이 평론의 대상이 된 책과 관련하여 납득될 수 없을 때에만(unsupportable by reference to the written book) 제소가능한 것이다. 이 납득할 수 있는 해석(supportable interpretation)에 의하면 비평자의 해석은 평가의 대상이 된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Milkovich 사건과 유사한 경우까지도 그 책 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심지어 본문해석의 경우까지 경계를 확정시켜 주는데, 비평자의 평론은 그 본문 안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생략된 것으로 평론자가 지적할 수 있는 합리적 평가 또는 해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해석」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우리의 결정 은 Milkovich 판결 이후에 결정되거나, 위 판결을 지지한 연방대법원의 유사한 판결에 그 강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위 판결들은 비평자가 본질적으로 모호한 주제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해설을 하는 경우 수정헌법 제 1 조에 따라 법원은 해석에 광대한 재량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 연방대법원 판결로는 Bose Corp. v. Consumers Union of United States, Inc., 466 U. S. 485, Time Inc. v. Pape, 401 U.S. 279 등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Masson 판결에서 「합리적인 해석의 기준은 비평자로 하여금 모호한 작품을 대상으로 평론을 함에 있어 필요한 해석의 재량성을 보장함으로써 언론자유의 원칙에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판시 하였으며 (111S. Ct. at 2434), 또한 직접적인 인용을 수정하였음을 이유로 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고는 그 수정이「언동에 의하여 전달된 뜻으로부터 중대한 변경」이 초래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록, Masson, Bose, 그리고 Pape 판결 모두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와 관련되어 있지만, 위 판결들은 피고가 거짓임을 아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허위성을 입증할 원고의 능력에 관한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위 판결들은 허위성 문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Masson 판결에 의거 해석의 자유(interpretive license)를 부여하고자 한다.

Ⅲ. 납득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의 적용

우리의 처음 결정의 판시처럼, 이 사건 불복의 쟁점은 이 법원이 재차 심리하기로 하는 순수히 법률문제인데, 이는 이 사건이 명예훼손의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문제된 발언이 명예훼손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또 그거이 입증가능한 것인지 즉 원고가 그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타임스 서평의 기사는 Moldea 의 전문분야에서 그의 명성을 침해하는 한 명예훼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은 우리가 이미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주된 요소는 입증가능성의 문제(the question of verifiability)이다. 비록 MOLDEA I 은 「간섭」이라는 책이 너무 많은 엉성한 저널리즘(too much sloppy journalism)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타임스지의 서평이

그 책에 대한 입증가능한 평가라고 판시했지만, 우리는 서평의 분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제소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은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따라 중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약간의 잘못은 보호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였으며, 연방대법원은 수개의 사건에서 수정헌법 제 1 조는 언론의 자유의 행사에 불가결한 숨쉴 공간을 보호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타임스지 가 위 책이 「너무 많은 엉성한 저널리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내용들이 「간섭」이라는 책의 납득할 수 있는 해석 이므로, 우리는 「너무 많은 엉성한 기사」가 입증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MOLDEA I 은 타임스지의 서평에서 문제된 5 가지의 내용 중 2 가지만 허위인 점을 입증할 수 있고, 나머지 3 가지 내용은 사실 이거나 또는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를 둔 의견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타임스지 의 내용 중 오직 두 문구만 잠재적으로 제소 가능한 것인데, 이들은 첫째, 위 책이 캐럴 로젠브룸이 피살되었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견해를 재생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Holden 가 1969 년 슈퍼볼 직전의 선수들간의 회동을 사악한(sinister) 모임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 MOLDEA I 이 이 사건의 문제된 내용이 서평에 나와 있다는 점과 오로지 문학작품에 대한평가라는 점을 도외시한 기준에 그 판시의 기초를 둔 것은 잘못이다. MOLDEA I 은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위 서평내용이 「간섭」의 성격을 잘못 규정하였기 때문에 허위인가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could find)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Milkovich 사안과 같은 통상적인 경우의 명예훼손에는 적정할지는 모르나, 책의 해석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다. 납득할 수 있는 해석기준(supportable interpretatlon standard)을 적용한다면, 이 사건문제 된 내용의 법률상 입증가능성 문제의 올바른 판단척도는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 라고 해도 서평의 시각이 위 책 「간섭」의 내용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없느냐 하는데 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이 법원은 타임스지의 서평은 제소가능 할 수 없다고 본다. 타임스지의 서평내용 중 위에서 본 오직 두 문구만 잠재적으로 제소 가능한 것인데, 이들도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 서평은 그 주장과 같이 위 책이 「엉성한 저널리즘」이라는 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진실이거나, 근거 있는 의견 또는 해석에 주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서평이 실질적으로 진실이고 따라서 제소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

Ⅳ. 결론

Moldea 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서평의 작가인 Gerald Eskenazi 의 「간섭」이라는 책에 대한부정적 정가는 Eskenazi 의 NFL 에 대한 충성에 일부 기인하고 있다고 많은 주장을 하였다. 즉, Moldea 는 주장하기를 Eskenazi 가 30 년 이상 NFL 의 취재담당기자로 활동하여 왔으며, 그 활동을 취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NFL 의 협조에 의존하여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간섭」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위 주장만으로 원고가 당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 서평자는 악평이 서평의 대상인 책의 저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 작가의 명예를 훼손 시 킬 의도로 씌어지는 악평 도 있겠지만,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다. 정말로 서평자가 책이 불량하다는 믿음을 갖고 쓰는 서평과 오직 해를 끼 칠 의 사로 쓰는 서평을 구분할 실행 가능한 방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서평의 해석이 납득할 수 없다는 사정없이 해악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송의 제기를 허용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소송의 법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다(McBride v. Merrell Dow & Pharmaceuticals,Inc., 717 F. 2d 1460). 이 법원은 납득할 만한 해석의 원칙(the 「supportable interpretation) rule)이 해를 끼칠 의사가 있는 서평자를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적용가능 한 원칙을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이 법원이 재고한 결과, 우리의 첫번째 결정(MOLDEA I)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첫번째 결정을 이 판결에 따라 변경하기로 하여 타임스지 가 승소한 제 1 심의 약식 재판을 인용하기로 한다.